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15. 10. 27.

제안자 : 행정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 문화예술사업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자 함

2. 수정내용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문화예술사업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에 “수탁기관선정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신설함(안 제8조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문화예술사업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탁기관선정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안	수정안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 으로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 으로 구성된 <u>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 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 하도록 한다. <u><후단 신설></u>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 ----- ----- <u>문화예술사업 수탁기관선 정심사위원회</u> ----- -----, <u>수탁기관선정과 관련하여 이 조례 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 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② (생략)	② (원안과 같음)